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5
----------	------

발의연월일 : 2019. 5. 7.

발의의원 : 김보경 의원, 서도원 의원

1. 제안이유

- 달성군의회 의원이 정책연구와 입법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다.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라.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마.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소속의원들이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입법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이를 위한 의정활동의 활성화 등을 목적(이하 본조에서 "연구단체의 목적"이라 한다)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군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 활동비"라 한다)란 연구단체가 연구단체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는 군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대표자가 연구단체의 나머지 의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단체의 활동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를 군의회에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등) ① 대표자가 연구단체를 군 의회사무국에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제2호 서식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등록된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는 등록된 연구단체의, 연구 등 활동 계획의 승인이나 연구 등 활동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변경) 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에 그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회부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4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변경) 신청의 수리, 연구 등 활동계획의 승인 및 연구 등 활동비의 지원을 하며, 연구활동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제6조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 의회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은 군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연구단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등록(변경)과 그 취소
2. 연구주제 조정과 연구 등 활동 계획의 승인
3. 연구 등 활동비 지원 및 회수
4. 연구단체의 육성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연구단체 가입) 군의회 의원은 제4조에 따라 등록(변경)된 연구단체 중 1개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의장은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등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되, 1개 연구단체에 대한 연간 지원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연구 등 활동비 집행 등 제한) ① 연구단체는 제10조에 따라 지원 받은 연구 등 활동비 범위에서 그 연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 등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나, 그 연구 등에 관한 전부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단체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조에 따라 승인 받은 연구 등 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등 활동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 등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 등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연구단체의 연구 등 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제12조(연구주제 등 변경) 연구 등 활동비 지원을 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연구 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3조(연구활동 기간)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한다.

제14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제10조에 따라 연구 등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종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한 후 그 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장은 그 보고서를 이용하여 의원 연구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설 립 목 적				
구 성 의 원	직 위	성 명	서명날인	비 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 활동 계획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주 요 내 용 요 약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 방법 및 세 부 계 획	「따로 붙임」	
연구 활동 비	총 액	금 원(W)
	세부내역	※ 「따로 붙임」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회의경비, 간담회비, 물품구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붙임 : 연구활동 방법 및 세부계획서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

연구단체명		
대 표 자		
변동사항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경일자		
변동사유		
기 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소속의원 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
연구주제		
연구목적		
심사 결과	내용	
	결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계획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			
연구 내용	당 초	주 제	
		목 적	
	변 경	주 제	
		목 적	
변 경 사 유			
변 경 내 용			
연구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 붙임 : 1.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1부.
 2. 연구경비 요구내역(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 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 추진사항 결과보고		(보고서 별첨)	
연구 활동비	수령액	금	원(₩)
	집행액	금	원(₩)
	잔 액	금	원(₩)
특기사항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첨부)	

- 붙임 1. 연구활동(중간, 최종결과) 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 사용 내역서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 활동(중간, 최종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

□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 명 날 인 서

의 원 명	서 명	날 인
김 보 경	김 보 경	
서 도 원	서 도 원	